

구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발의연월일	2023. . .
발 의 자	정지원 의원 외 12명

구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정지원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발의연월일: 2023. . .

발의자: 정지원·강승수·김근한·김낙관
김재우·김정도·김춘남·박교상
신용하·이명희·이상호·이정희
양진오 의원(13명)

1. 제안이유

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 개선 사항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알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른 문구 정비
- 나. 학교 밖 청소년들의 인식 개선을 위하여 시장의 책무 조항 신설
(안 제3조제2항)
- 다. 「구미시 청소년 육성조례」 폐지에 따라 인용 법령 및 위원회 변경(안 제5조)
 - 당초: 「구미시 청소년 육성조례」 “청소년육성위원회”
 - 개정: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제10조 “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”
- 라.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조항 신설(안 제6조의2)
- 마. 학교 밖 지원센터에 대한 지도·점검 등 조항 신설(안 제7조의2)
- 바. 제8조(학교 밖 청소년 대안교육기관 지원) 조항 삭제

3. 조 례 안 : 불 임

4. 참 고 사 항

가. 관계법령

- 1) 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
- 2)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제10조
- 3) 「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」 제2조

나. 부서검토: 교육청소년과 의견제출(불임)

다.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(불임)

라. 기 타: 신·구조문대비표(불임)

구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「청소년기본법」 제3조”를 “「청소년 기본법」 제3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가목 중 “같은 법 제14조 제1항”을 “같은 법 제14조제1항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4. “대안교육기관”이란 「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항에 따른 시설·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.

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을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조사·연구·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제5조제2항제7호를 제9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항(종전의 제2항) 중 “「구미시 청소년 육성조례」”를 “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제10조”로, “청소년 육성 위원회”를 “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”로 한다.

7.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 및 사회적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

8.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한 제도개선

제6조제2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. 학교 밖 청소년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

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조의2(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1.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
2. 학교 밖 청소년 상담 및 교육 지원 사업
3. 학교 밖 청소년 자립 지원 사업
4. 학교 밖 청소년 진로 교육 사업
5. 학교 밖 청소년 여가·문화 지원 사업
6. 학교 밖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사업
7.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

제7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.

2. 「청소년 기본법」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

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조의2(지도·점검 등)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센터에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,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.

② 지원센터 장은 지도·점검 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

한다.

제8조를 삭제한다.

제13조 중 “「구미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」”를 “「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	제2조(용어의 정의)	-----	
1. “청소년”이란 「청소년기본법」 제3조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.		1. ----- 「청소년 기본법」 제3조-----	-----	
2. “학교 밖 청소년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.		2. -----	-----	
가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의 초등학교·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		가. -----	-----	
나.·다. (생략)		나.·다. (현행과 같음)	-----	
3. (생략)		3. (현행과 같음)	-----	
4. “대안교육기관”이란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4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학교를 제외한 곳으로서 대안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을 말한다.		4. “대안교육기관”이란 「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2항에 따른 시설·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.	-----	

5. (생략) 제3조(시장의 책무) (생략) <u><신설></u> 제5조(구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의 기능) ① (생략)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1. ~ 6. (생략) <u><신설></u> <u><신설></u> 7. (생략)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「구미시 청소년 육성조례」에 따라 구성된 구미시 <u>청소년 육성 위원회</u>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. 제6조(기본계획의 수립) ① (생략)	5. (현행과 같음) 제3조(시장의 책무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 ②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을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조사·연구·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 제5조(구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의 기능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1. ~ 6. (현행과 같음) 7. <u>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 및 사회적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</u> 8. <u>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한 제도개선</u> 9. (현행 제7호와 같음) ③ ----- 「<u>청소년복지 지원법</u>」 제10조----- <u>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</u>-----. 제6조(기본계획의 수립) ① (현행
---	---

략)

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.

1. ~ 6. (생략)

<신설>

③·④ (생략)

<신설>

과 같음)

② -----
-----.

1. ~ 6. (현행과 같음)

7. 학교 밖 청소년 인식 개선에
관한 사항

③·④ (현행과 같음)

제6조의2(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
업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
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
년 지원 사업을 예산의 범위
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1.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
적 인식 개선 사업

2. 학교 밖 청소년 상담 및 교육
지원 사업

3. 학교 밖 청소년 자립 지원 사
업

4. 학교 밖 청소년 진로 교육 사
업

5. 학교 밖 청소년 여가·문화
지원 사업

6. 학교 밖 청소년 건강증진 지
원 사업

7.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
을 위해 필요한 사업

제7조(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)

① 시장은 효율적인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(이하 “지원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.

1. (생략)

2. 「청소년 기본법」 제3조 제8호의 청소년단체

3. (생략)

② 지원센터 기능은 다음과 같다.

1. 학교 밖 청소년 상담, 보호 지원

2.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

3. 학교 밖 청소년 건강권, 인권, 차별 실태조사 및 개선 대책 마련

4. 학교 밖 청소년 진로 교육

5. 학교 밖 청소년 취업 지원 프로그램 연구 및 운영

6.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네트워크 구축 운영 관리

7. 대안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

제7조(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)

① -----
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2. 「청소년 기본법」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

3. (현행과 같음)

<삭 제>

보급

8. 그 밖에 시장이 추천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항

③·④ (생략)

<신설>

제8조(학교 밖 청소년 대안교육기관 지원) ① 학교 밖 청소년 대안교육기관으로 지원받으려는 자는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대안교육기관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1. 목적

2. 명칭

3. 주소 및 위치

4. 개관 연월일

5. 교육여건

③·④ (현행과 같음)

제7조의2(지도·점검 등)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센터에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,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.

② 지원센터 장은 지도·점검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.

<삭제>

<u>가. 시설현황</u> <u>나. 직원현황</u> <u>다. 교사의 배치도 및 평면도</u> <u>6. 자산의 총액</u> <u>7. 학교 밖 청소년의 성장과 교육과정 운영계획서</u> <u>②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안교육기관의 지원대상 범위 및 지원규모를 결정할 수 있다.</u> 제13조(준용) 보조금의 교부·사용 등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「구미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」에 따른다.	제13조(준용) ----- ----- ----- -- 「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」--.
--	---

관계법령

□ 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

제5조(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「청소년 기본법」 제14조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1.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 및 사회적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

제8조(상담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심리상담, 진로상담, 가족상담 등 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.

- ② 제1항에 따른 상담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.

제9조(교육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이 학업에 복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의 초등학교·중학교로의 재취학 또는 고등학교로의 재입학
2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60조의3의 대안학교로의 진학
3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7조의2에 따라 초등학교·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의 준비

4.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② 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.

제10조(직업체험 및 취업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이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의 체험과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직업적성 검사 및 진로상담프로그램

2. 직업체험 및 훈련프로그램

3. 직업소개 및 관리

4.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의 직업체험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취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·기술 및 태도를 습득·향상시키기 위하여 직업교육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.

③ 제1항에 따른 지원과 제2항의 직업교육 훈련 내용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.

제11조(자립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생활지원, 문화공간지원, 의료지원(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제6조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후 확진을 위한 검사에 사용된 의료비의 지원을 포함한다), 정서지원 등을 제공할 수 있다. <개정 2018. 1. 16.>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교육, 법률교육, 문화교육 등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이 필요한 학교 밖 청소년에게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제14조에 따른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우선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.

□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

제10조(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합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기청소년의 복지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는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(이하 “심의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② 심의위원회는 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·단체의 장 또는 종사자와 그 밖에 청소년복지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한다.

③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, 위원의 위촉 및 회의 절차 등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.

□ 「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」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2. “대안교육기관”이란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 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하여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시설

검 토 의 견 서

부서명 : 교육청소년과

조 례 명	구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☐ 검토 사항 ○ 근거 법령 :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○ 변경 및 신설 조항 등 검토 ☐ 주요 사항 ○ 알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른 문구 정비 ○ 학교 밖 청소년들의 인식 개선을 위하여 시장의 책무 조항 신설 (안 제3조제2항) ○ 「구미시 청소년 육성조례」 폐지에 따라 인용 법령 및 위원회 변경 (안 제5조) - 당초 : 「구미시 청소년 육성조례」 “청소년육성위원회” - 개정 :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제10조 “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” ○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조항 신설(안 제6조의2) ○ 학교 밖 지원센터에 대한 지도·점검 등 조항 신설(안 제7조의2) ○ 제8조(학교 밖 청소년 대안교육기관 지원) 조항 삭제 ☐ 검토 결과 ○ 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 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에 의거 - 학교 밖 청소년 인식 개선사항 추가 -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대한 구체적 명시 및 지도·점검에 관한 조항 신설 타당 ○ 변경된 근거법령 및 문구 수정, 필요없는 조항 삭제 등 조례 전반에 대한 정비 필요	

○ 추가 검토 요청

- 제5조제2항제8호와 제9호 중복 검토 필요

8.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교육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

9.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에 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

- 제2조제4항 변경

- 당초 : “대안교육기관”이란 「초·중·등교육법」 제4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학교를 제외한 곳으로서 대안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을 말한다.
- 개정 : “대안교육기관”이란 「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항에 따른 시설·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.

□ 조례 제(개)정에 따른 향후

- 기대효과 : 조례안 전반 정비로 사업의 명확성 제고 및 학교 밖 청소년 인식개선 기대
- 소요예산 : 현재 예산에서 순증가 금액 없음
 - 국비사업(청소년육성기금)으로 매년 시행중
 - 2023년 예산 : 303,567천원(기 126,447 시 177,120)
- 문 제 점 : 없음

구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수반요인

- 조례 개정으로 수반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없음
 - 국비사업(청소년육성기금)으로 매년 시행중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1호
 - 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- 세출의 순증가액 없음

4. 작성자

- 교육청소년과 교육지원팀 김홍철(☎054-480-2713)